

동두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3. 1. 15 동두천시장이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 1. 15
- 다. 상정일자 : 제12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6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업체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환경부에서 시달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최근 가전제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형폐기물의 종류도 증가 하여 새로운 종목을 추가지정 규격별로 세분화하여 처리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신청 및 구체적 허가 검토사항을 명시하여 합리적인 허가 및 허가제한 기준 마련
- 대형폐기물 종류를 당초 종별 30종 부과기준별 44종목에서 3분류 70종 규격별 105종류로 세분화 하여 명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한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최근 가전제품 사용이 날로 증가하면서 대형폐기물 종류도 다양하게 많아 당초 30종 44개종목에서 70종 105개종목으로 추가 지정하여 규격별로 세분화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됨.

특히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신청 및 허가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가기준을 마련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폐기물처리수수료 요율에 있어서도 한수이북 인근 지역인 의정부, 남양주

시, 구리시 등 타시군과 수수료를 비교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반대토론 : 김경차 의원)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신청 및 구체적 허가 검토사항을 명시하여 합리적인 허가 및 허가제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이나 폐기물 허가신청시 부터 제11조의2 제2항의 허가기준을 적용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함.

제11조의2 제2항 “시장은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를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로 수정코자 함.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제 출 안	수 정 안
제1조 ~ 제11조(생략)	제1조 ~ 제11조(제출안과 같음)
제11조의2(폐기물처리업허가등) ①(생략)	제11조의2(폐기물처리업허가등)①(제출안과 같음)
② <u>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u>	②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 ----- ----- -----
제12조 ~ 제25조(생략)	제12조 ~ 제25조(제출안과 같음)
부 칙 (생 략)	부 칙 (제출안과 같음)
별표1 ~ 별표8(생략)	별표1 ~ 별표8(제출안과 같음)